

하남시고시 제2022-84호

하남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풍산지구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풍산지구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련 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계획과(☎031-790-637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토지 이용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2022. 8. 17.
하 남 시 장

■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2. 용도지역·지구·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3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4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가. 근린생활시설용지 : 변경부분에 한함

도면번호	가구번호		획지번호	면적(m ²)	비고
-	근6	기정	-	781.1	사회주택 용지 변경에 따른 근6 폐지
	근6	변경	-	-	

나. 공동주택용지 : 변경부분에 한함

도면번호	가구번호		획지번호	면적(m ²)	비고
-	아11	신설	-	781.1	사회주택 용지 변경에 따른 아11 신설

5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근린생활시설용지 : 변경부분에 한함(근6 폐지)

나. 공동주택용지 : 변경부분에 한함(아11 신설)

도면번호	위치	구분	계 획 내 용	비고
-	아11	용도	• 허용용도 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(기숙사를 제외한다) -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, 복리시설(건축법 상의 제1,2종 근린생활시설 중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및 주민공동시설에 한함) 및 간선시설로서 불허용도외의 용도 - 건축법상의 제1,2종 근린생활시설 중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 획 내 용	비고
-	아11	용도	• 불허용도 -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- 건축법상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- 건축법상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, 다목, 마목, 사목, 차목 중 장의사, 카목 중 교습소 및 직업훈련소, 거목, 너목, 더목, 러목	
		건폐율	60% 이하	
		용적률	250% 이하	
		높 이	5층 이하	
		배 치	전면방향 : 20m 도로변	
		형 태	계획설명서 참조	
		색 채	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	
		건축선	-	

6. 기타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※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(변경부분에 한함)

제3장 공동주택용지(변경사항에 한함)

제22조 주택유형의 지정

- ①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주택단지에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지정된 유형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
- ② 공동주택용지의 유형은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 1. A : 전용면적 60㎡ 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
 2. B : 전용면적 60㎡ 초과 85㎡ 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
 3. C : 전용면적 85㎡ 초과 110㎡ 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
 4. D : B 와 C 혼합
 5. E : 전용면적 85㎡초과의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 6. F : 전용면적 60㎡미만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, 근린생활시설(신설)